

##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

- 관세청 고시 제2009-113호, 2009. 8. 26 -

관세청은 2009. 5. 21 또는 7. 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거나 2009. 7. 1 할당세율이 인상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하는 과대환급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하여 고시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의 대상물품

- (1) '09. 5. 21 또는 7. 1 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·인상되는 원당 등 48개 품목중 수출이행기간 단축 실익이 미미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
  - '09. 5. 21 또는 7. 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사탕수수당 등 4개 품목
  - '09. 7. 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3개 원유제품

나.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

- (1) 할당관세율 인하('09. 5. 21, 7. 1) 품목
  - '09. 5. 20 또는 '09. 6. 30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원당 등의 4개 품목 : '09. 9. 30까지 제한
- (2) 할당관세율 인상('09. 7. 1) 품목
  - 원유, LPG 등 3개 품목 : '09. 7. 31까지 수출한 경우에는 '09. 6. 30 이전 수입신고필증으로만 환급제한

※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([www.customs.go.kr](http://www.customs.go.kr)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-154호, 2009. 9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작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**□ 주요내용**

가.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(별표 4중 (50), (373), 별표 5 중 (30))

- (1)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합리적 사용을 위해 잔류허용기준 개정
- (2) 피망 중 베나락실과 수박 중 스피로메시펜 및 수삼, 건삼, 홍삼에 대한 디메토모르프 기준 개정

나.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신설(별표 4 중 (4), (50), (85), (203), (285), (326), (337), (345), (370), (404))

- (1)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

준을 신설하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

- (2) 농산물 중 나프로파마이드 등 10종에 대한 기준 신설

다.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(별표 4 중 (405), 별표 5 중 (60))

- (1) 농약으로 새로 사용등록된 농약 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
- (2) 농산물 중 사이에노피라펜과 인삼 중 포세틸-알루미늄에 대한 기준 신설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**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32호, 2009. 8. 21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, 미생물 등 유해물질 규격을 신설·강화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**□ 주요내용**

가. 초산비닐수지 등 59 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

- 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(Ⅱ. 제3. 가. 241, 321, 322, 323, 324, 325, 330,

- 331, 332, 333, 337, 339, 342, 343, 347, 348, 349, 356, 358, 359, 360, 361, 362, 363, 364, 365, 368, 370, 371, 373, 374, 375, 376, 381, 386, 388, 389, 390, 392, 393, 394, 395, 396, 399, 400, 402, 404, 405, 406,